

치과 칼럼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술

턱뼈 가운데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치조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치조골의 특징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은 이 치조골이 치아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즉 치아가 상실되면 치조골도 역할을 상실하고 소실됩니다.

우리 몸의 뼈는 겉보기에 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골 재형성 과정을 거치는 매우 동적인 조직입니다. 턱뼈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골 소실이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고 틀니처럼 뼈와 상부 연조직에 의해 지지되는 보철물들은 골 소실을 가속화 시킵니다.

이렇게 뼈의 형태와 양의 변화는 임플란트 치료를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치아 발치 후 발치와가 정상적으로 뼈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초기 치유 과정을 거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뼈의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발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거나 많은 골소실을 동반하는 치주염이나 치근단 병변들로 인해 치아가 발치 되었을 때 정상적인 크기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기에는 뼈의 양이 모자랄 수도 있고 올바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임플란트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기능성 회복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고 심미적인 이득은 부가적인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심미적 회복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현재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뼈나 연조직 이식술을 통한 심미적 회복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뼈 이식이라고 하면 적정 크기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예비 단계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골 이식을 해야 하는 증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진단 과정에서 이상적인 치아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치과용 왁스를 이용해 연구 모형에 모형치아 배열을 하게 되는데 이 치아 위치와 하부 뼈의 형태와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 관계를 토대로 골이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골 이식술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직적인 골 소실은 적절한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직적인 골 증대술은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렵고 증대양 또한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평적 골소실로 걱정된 직경이 임플란트 식립에 곤란할 경우나 식립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수평적 골 증대술이 시술되는데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임플란트 치료 계획에 있어 중요한 시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골 이식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자가골, 사체에서 채취한 동종골,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서 채취한 이종골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인조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종골이나 이종골은 면역 거부 반응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자가골을 이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와 짧은 치유 기간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골 채취를 위해 또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단점으로 많은 경우 시판되는 골 이식재를 이용한 시술들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좀 더 긴 치유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높은 장기 성공률로 치아 상실 수복에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번 심겨진 경우 제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첫단추를 끼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 이식을 시행하였을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치료 기간이 더 걸리지만 이렇게 더 투자한 시간으로 더 나은 장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안과 긴 안목을 가지고 임플란트 치료에 접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임플란트 수술전문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법률 칼럼

유한책임회사 (LLC) 설립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유한책임 회사를 설립한다. 하지만 필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고객들의 경우 이미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혹은 동업자와 합명회사(Partnership)의 형태로 사업을 하다가 개인 재산의 보호와 안전성을 위해 사업체의 형태를 예방차원에서 유한책임회사(LLC)로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드물지만 중소기업의 주식회사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편리한 운영관리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동시에 폐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LLC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모든 의사결정권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한 동의가 필요하며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영구적인 존속성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업체가 커가면서 외부투자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면 LLC 설립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일단 어느 주에 설립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회사의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 단지 희망하는 상호명이 해당 주에 이미 존재하는지의 확인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의 주마다 회사명 작명에 관한 규정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특정 업종이나 사업의 목적과 관계되는 단어(bank, insurance 등)의 사용이 규제되고는 한다.

상호명이 결정되면 설립신고 단계에 돌입하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에 Articles of Organization (Form LLC-1)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LLC의 정관에는 소재지, 설립자의 연락처, 존속기간, 설립 목적 등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게 되어 있다. 또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LLC 역시 설립 주 영토 내에 상주하는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이 있어야 하는데, 설립하고자 하는 주에 직원이 없다면 제 3자를 지정해 두거나 약간의 비용으로 등록 대리인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다. 회사 설립 허가서가 발행되면 국제청(IRS)에서 고용주번호(EIN)을 발급받아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카운티나 시정부

자치제를 통해 사업자면허를 비롯한 각종의 허가 및 필요한 인가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체 외적으로는 위와 같은 신고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설립 신고를 하거나 정부기관을 통해 허가나 발급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작업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다만 설명을 잘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잘못 등재하는 실수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단계에서는 회사 명칭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실수를 최소화 하여 설립 신고 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LC를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은 아무래도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는 일이다. 주식회사의 사규와 비슷한 목적으로 작성되며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명시한 사원들 간의 합의서인데,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핵심 사항들이 운영계약서를 통해 규정된다. 사업의 목적과 범위, 출자자들의 이익과 손해 분배방법, 소수주주의 권한과 의무, 지분, 등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운영계약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혹은 잘 못 작성되었는지를 바로 알아보기 힘들 수 있는데, LLC에 대한 별다른 이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작성될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원들 간의 법적 분쟁은 물론 상법상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본 글은 캘리포니아 상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949) 535-5275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